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5 | 2024.10.07. (2024.09.30~10.0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30~10.06)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며,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방부>는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분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간에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는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수익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도와 교육청 회계 간 재산이관 시 이관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가격 기준을 국유재산과 맞추어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청>은 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 여부 반영,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고객에 대한 감면 규정 개선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한 기술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창 의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주주총회에서의 분리선출 제도를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9인)**」 ,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국제협정 가입 시까지 항공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여 세계 주요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숙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4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10/7 10개 상임위, 10/8 10개 상임위, 10/10 9개 상임위, 10/11 12개 상임위, 10/12 1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7
-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기획재정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1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4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특허청)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9인)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19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1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2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22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2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24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2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6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26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27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7인)	28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9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3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3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3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3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3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3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3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3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30~10.06) [바로가기](#)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국제상사중재] 중재절차에서의 기밀성 - 다양한 국가의 법령 및 판례 고려 필요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4 (2024년 10월 1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30조원 이상 확대 -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 활성화	2024-10-02
-------	--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함

’21~’22년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2천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시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400→100%)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함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배 수준(1→2조원)으로 확대함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면서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함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혼잡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함.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천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 및 새로운 대상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하여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을 활성화한다.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유희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함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함.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함

대체도로가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의 경우 공사원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포함하고,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 시 민간의 최초제안자가 기획한 사업내용·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소통 노력을 강화함. 부대사업 유형을 기존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부대사업의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일치시키며 ‘부대사업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부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을 허용하여 부대사업을 활성화함

이외에도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 → 분기 또는 월별)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 → 자율) 유연화,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 등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득세 감면 연장(~'27년)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투심 면제, 추진방식·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안 제공,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 전문기관 확대(15→17개)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함

이번 대책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및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임

국토교통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 불공정·불법행위 집중점검,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한 바다·산림골재 공급 확대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내 확정·발표

2024-10-02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며,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하였음**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함**.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함.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나갈 계획임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바,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하였음**.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다음으로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하여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함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함.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함. 또한,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30 시행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대출을 한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9-30 시행
-------	------------------------------	---------------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 재개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 법률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등에 관한 권한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10-01 시행
-------	-------------------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가입기간과 청약저축의 납입회수·저축총액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합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당첨자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당첨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에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상향하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로 보상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며**,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 및 주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0-02 시행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보낸 확정일자 있는 문서의 최대 회신기한을 1개월로 하던 것을 20일로 단축함**으로써,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10-04 시행

전문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과 관련하여 그 대상인 의약품 등의 제조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기한을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당기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면제 범위 개선 (안 제4조제2항)

- 전문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 시 그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에서 해당 품목과 제조공정, 제조설비 등을 모두 동일하게 제조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던 자료로서 1개 제조단위 이상의 실적 자료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해당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제출이 곤란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자료의 제출이 곤란한 사유와 해당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②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세분화 (안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인 원료의약품의 합성, 발효, 추출, 정제 등 제조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제조방법별로 세분화하도록 함

③ 완제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제도 개선 (안 제49조제3항, 안 제49조제4항 신설)

- 의약품 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완제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공급 중단 보고 기한을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당김
- 제조판매·수입업자가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줄이려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30. ~11.11.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분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 간에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산정차수 등 명시
- ② 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료로 평가 가능
- ③ 수의계약 대상에 특수작전·대테러 전담부대 관련 장비 추가
- ④ 합정 국내구매, 우주개발사업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기품원에 위탁
- ⑤ 옴부즈만 위촉대상에 변호사 등 법률상 자격요건 충족자 추가
- ⑥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임기 명확화

※ 문의처 : [국방부 전력정책과](#) (전화: 02-748-5316)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30. ~11.11.
-------	----------------------------------	------------------------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서 발급기관에 추가
- ② 공사이행보증에 대한 한시 계약 특례 근거규정 마련
- ③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임차 수의계약도 허용
- ④ 전체 신기술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
- ⑤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 ⑥ 저탄소제품을 제한·지명경쟁에 추가

- ⑦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당초 계약의 입찰일로 하도록 변경
- ⑧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 마련
- ⑨ 청년창업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 ⑩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 신설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9.30.
~11.11.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② 하자책임 및 공정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개정
- ③ 부정당제재 감경범위 확대
- ④ 사기·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부정당제재 정도 세분화
- ⑤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있어 계약금액이 아닌 이행완료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30.
~11.1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도와 교육청 회계 간 재산이관 시 이관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가격 기준을 국유재산과 맞추어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증권·부지 수익매각 허용 (안 제38조제1항)**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위험 분산을 위해 공동출자자에게 지자체 지분증권 수익매각이 필요하나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공유지 활용 프로젝트의 경우 SPC에 대한 수익매각 근거가 없어 부지확보에 불확실성이 발생
- 이에,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시행자(SPC)나 자펀드에 출자한 경우 공동출자자에게 해당 지분증권을 수익매각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시행자(SPC)에게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익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지매각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 착공 또는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 조건 부여

②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계간 재산이관 가격 기준 개선 (안 제27조제7항)**

- 시·도는 폐교를 회계간 재산이관의 방법으로 취득 활용하고자 하나 현행 법령 상 회계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취득가격)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은 시·도로 이관하는데 소극적이고 민간에 매각을 선호하는 등 지자체 폐교재산의 활용을 저해
- 이에, 시·도와 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 외에도 재산가격*, 감정평가액 중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산가격(영 § 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③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 교환 요건 완화 (안 제27조제3항)**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 시에는 상호 재산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상호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려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만 필요하나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 필요하여 불협 문제 발생

* 재산가격(영 § 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이나 타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 시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 문의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전화: 044-205-3786, 팩스: 044-205-8967\)](tel:044-205-3786)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0.02.
~11.11.

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 여부 반영,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고객에 대한 감면 규정 개선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한 기술거래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수수료 감면제도 정비**

- 특별재난 지역 선포 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현행 모든 경제주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징수규칙 제13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삭제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적극적 활동을 위해 이전등록료·신탁(변경)등록료 면제 및 특허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을 50% → 70% 조정

③ 지식재산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촉진 등을 위하여,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민법 제162조에 근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④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 사업개시 후 3년 내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우선심사신청료(연간10건) 감경기간을 3년 연장 ('24년 → '27년)하고, 신청건수가 미미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연간 2건) 감경 및 은행이 신탁권 설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의 특허권·디자인권을 이전받을 때 감경되는 특허료(등록료) 감경은 2024년 12월 31일에 기간연장 종료

⑤ WIPO 국제사무국 이관서류 처리에 따른 수수료 규정 명확화

- 특허청으로 잘못 접수된 국제출원 서류는 접수 후 기본사항의 검토 등 일반적인 출원에 준하는 기본절차를 거친 후 국제사무국으로 이송되는 바 이 경우 국제사무국으로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송달료(45,000원)를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근거하여 출원인에게 부과

⑥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 사용에 따른 국제 출원료 감경

-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사용한 출원인에게 전자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출원료(300스위스프랑) 감경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전화: 042-481-8336, 팩스: 042-472-346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2024-09-30 발의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주주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특히 최근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합병, 지배주주간 프리미엄부 주식 매매, 물적분할 후 상장 등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소액주주 ·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현행 상법이 무력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이사에 대하여는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상 금지되지 않을뿐더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이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창의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회사의 발전과 장기적인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여,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382조의3)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9인)

2024-09-30 발의

우리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Governance(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재벌)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음. 특히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공평한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이익에만 충실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공정한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심화되고 있음. 주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 신사업에 성공하였으나, 막상 그 투자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할 시점에서는 신기술, 신사업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한 후 별도 상장하여 주주들에게는 투자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음. 신사업이야말로 투자한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성공한 신사업을 떼어내면서 오히려 투자한 모기업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됨.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후 미래성장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한 후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이렇게 일반주주들은 피해를 본 반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신규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음

합병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도외시되고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나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합병이 추진되어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재용 회장이 그룹 내 주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그룹 주력회사인 삼성물산의 다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사례가 대표적 사례임. 최근의 두산밥캣 합병 사례에서도 일반주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 두산밥캣이 두산로봇틱스 보다 매출이 180배나 많고 영업이익도 1조가 넘는 반면 두산로봇틱스는 적자 기업인데, 두산로봇틱스가 두산밥캣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주식인수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매각 가격을 받았다면 두산 에너지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을 것이나, 불공정한 합병으로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심지어 수천 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새로 기업을 인수한 지배주주가 자진 상장폐지하여 일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이사회 이사회의 주주의 이익보다는 기업집단 내지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 투자에 소극적이 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침체되는 폐해가 만연하고 있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은 자본시장이 살아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2022~2024년 사이 일본과 미국 등 자본시장이 20%를 넘는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자본시장은 마이너스와 소규모의 상승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한국의 개미투자자들은 미국과 일본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몇몇 글로벌 기업 외에 투자가 필요한 한국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일본의 2010년대 “자본시장 value up”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value up”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일본의 “자본시장 value up” 정책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안심하고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본이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사회를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 1/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공적연금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일본이 먼저 시행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로 벤치마킹한 것이었음.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경영임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ing)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1/3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의 기업 이사와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그리고 독립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주주총회에서의 분리선출 제도를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한편, 이러한 독립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장주주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임. 이와 같이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사선출 등의 지배구조를 보다 주주 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 신설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회사에처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주주는 회사와 달리 이사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법제사법위원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현행법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일반행정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법제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자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생성 AI)에서의 오류 발생 최소화 등 법령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민간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현행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원 판례를 수집·제공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제4항 및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2024-09-30 발의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도록 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5항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09-30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는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12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2024-09-30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이자 심판기관으로 기능하면서 당사자의 경우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 심리에 비해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 삭제)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2024-10-02 발의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 ②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안 제24조제3항 · 제4항)
- ③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제1항)
- ④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함 (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 제4항)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3항)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기술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힘입어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룬 분야임. 다양한 성공사례가 배출되며 향후에도 스타트업 등 많은 도전자가 합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산업 분야로도 꼽힘

그러나 초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의 산업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시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2023년 5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시행하였고, 일본도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리즘 등 공시의무, 감독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독일과 영국, 호주 등도 법 개정 및 행정입법 등을 통해 규정함

이에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해당 산업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5조의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1인)

2024-10-02 발의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3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2024-10-04 발의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안 제38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024-10-04 발의

항공제조산업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부품의 생산·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품생산·조달체계를 갖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사업으로 관세부과는 원가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임. 이에 미국·EU·일본·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 협정을 통해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 협정이 아닌 자국법 개정을 통해 관세를 감면해왔으며, 주요국과의 FTA 체결·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하였고,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관세감면을 조정을 거쳐 2029년 이후 영구 폐지될 예정이지만, 실제 FTA를 통하여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 항공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겨우 23%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항공 정비비 지출이 늘어 항공운송업계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부과된 관세는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예컨대, 각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LCC 항공사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선을 줄이고 국제선 운항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민 교통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올해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추진 중인 항공부품 세계 생산기지화를 위한 소부장 사업, 정부의 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향후 차질을 빚거나 항공우주산업의 제조·정비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도 농후함

이와 같은 우려로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WTO TCA,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에 약 2년, WTO 가입 절차를 최종 비준까지 약 2~3년 이상 진행해야 하므로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국제협정 가입 시까지 항공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여 세계 주요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 89조제6항제1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2024-10-04 발의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2024-10-04 발의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장에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크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에 방연(防煙)마스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안 제9조의3 신설 등)

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2024-09-30 발의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2024-10-02 발의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에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 등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해운 부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시애틀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제외한 국내 항만 간 또는 기업 간 운항되는 녹색해운항로는 전무한 상황으로, 기존 법률에 근거한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서 더 다양한 층위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 ③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④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공사 및 부두운회사 등이 국내외 기관·단체 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확대 촉진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⑤ 녹색해운항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함 (안 제8조)
- ⑥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⑦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한 사업 중 탄소중립 달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운영·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익의원 등 17인)

2024-09-30 발의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예산 책정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미뤄봤을 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주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함 (안 제1조)
- ②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정의함 (안 제2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지원위원회(“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라 함)를 둠 (안 제7조)
- 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024-09-30 발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방문객 저하, 빈점포 증가 등 지역 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반면, 민간의 새로운 상권주체가 지역가치를 접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공하는 상권도 다수 등장하고 있음. 특히, 물리적 사업장인 상가를 운영하는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사례가 대두되고 있음

이와 같이 새로운 상권이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내부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혁신자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역상권 지원제도는 활성화구역 지정, 지원사업 보조 등에 머물러 있어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자원 유입에 한계가 있음. 이는 지역소멸 해결의 단초가 되는 매력있는 상권을 육성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함

이에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기획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안 제2조, 제26조의2, 제26조의9, 제26조의11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가격 위기가 장기화·상시화되면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에너지 위기는 고물가, 무역적자, 재정 악화와 같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어,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최근 EU·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개선 요구를 강화하는 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이 우리 수출기업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에너지 위기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특히 뿌리·소재부품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계기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뒤처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해외수출 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현행법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되어 공공·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수급안정 조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건물·수송부문 효율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향상·절약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의 범위) 및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함

그러나 최근 온라인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되고 있음. 아울러, 수도권·광역시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진출한 지역은 이미 새벽배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온·오프라인 유통 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방에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된 국내 유통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전 국민적 소비심리 부양을 통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행사·쇼핑주간 개최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및 제15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2024-09-30 발의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90조의2)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2024-10-02 발의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증가추세로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가 되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초고령사회에서 대상포진의 예방은 특히 노령인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되어 발생한다는 특수한 기전으로 인해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백신접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을 발병 후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 (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2024-09-30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 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품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 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4-09-30 발의

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안 제70조제1항)
- ②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 ③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 (안 제72조제7항)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2024-10-02 발의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23년 기준 서울 임금수준(100) 대비 울산의 임금 수준은 91.3%, 대구 80.8%, 광주 77.5%, 제주 71.4%에 그쳤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4조)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4-09-30 발의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가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보다 그 기간이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제3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10-04 발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 (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 ②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 ③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8조의4제3항)
- ④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안 제87조의3제1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 시 간
10. 7.(월) 10개 위원회	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7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출연연구기관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4개 기관	
	외통위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	
	행안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10개 기관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복지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토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10:00
10. 8.(화) 10개 위원회	법사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4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세종청사 10:00
	교육위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	국회 10:00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등 14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10:00
	외통위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4개 기관	국회 10:00
	국방위	국방부 및 관련기관 등 29개 기관	국방부 10:00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8개 기관	
	복지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노위	환경부	국회 10:00
10. 10.(목) 9개 위원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회 10:00
	기재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정부세종청사 10:00
	과방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개 기관	국회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5개 기관	국회 오후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등 10개 기관	합동참모본부 10:00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등 4개 기관	국회 10:00
	문체위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등 8개 기관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등 9개 기관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토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4개 기관	
10. 11.(금) 12개 위원회	법사위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국회 10:00
		군사법원	국방부 14:30
	기재위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00
	교육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등 14개 기관	
	과방위	[현장시찰] 울산새울3호기, 경주월성원전및맥스터점검, 방폐장시찰	울산, 경주

	외통위	<미주반> 주미국대사관	주미국대사관 10:00
		<구주반> 주오이시디대표부, 주프랑스대사관 등 4개 기관	주오이시디대표부 10:00
		<아주반> 주인도대사관	주인도대사관 10:00
	국방위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회 오전
		[현장시찰] 서울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 시찰)	서울 오후
	행안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 10:00
	문체위	[현장시찰]	원주 등 강원권 10:00
	농해수위	[현장시찰]	여주 RPC 10:00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개 기관	국회 14:00
	산자중기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3개 기관	국회 10:00
	환노위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 17개 기관	
		[현장시찰]	기상청 서울청사 오후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8개 기관	한국철도공사 10:00
10. 12.(토) 1개 위원회	외통위	<미주반>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유엔대표부 10:00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7(월) 14:00	대학 내 노동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김문수·이용우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7(월) 14:00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광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8(화) 14:00	[2024년 아동복지 글로벌심포지엄] 국경을 넘는 아동복지 현장 이야기	전진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0/10(목) 10:00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뜯어고칠까?	박 정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10(목) 14:00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어기구·이원택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0/11(금)	「2024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 안 입법 의견」 발간	국회사무처	
	10/8(화)	「금주의 서평」 제698호 발간 - 도서명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저자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국회도서관	
	10/10(목)	「현안, 외국에선?」 제91호 발간 미국 청소년 약물중독의 예방과 대책		
	10/7(월)	「NABO Focus」 제76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0/11(금)	「2025년 NABO 경제전망 : 2024~2028」 보고서 발간		
	10/7(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0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30(월)	「행정입법 분석·평가 기준과 실제」 발간	국회사무처	
	9/30(월)	「The 현안」 제29호 발간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	국회도서관	
	10/2(수)	「금주의 서평」 제697호 발간 - 도서명 : AI 시대의 정치이론 - 저자 : 마티아스 리스		
	9/30(월)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9/30(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9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30~10.06)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30(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9/30(월)	국제상사중재	중재절차에서의 기밀성 - 다양한 국가의 법령 및 판례 고려 필요
10/4(금)	ESG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4 (2024년 10월 1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